문서번호	기획예산과- 101180
결재일자	2015.11.20.
공개여부	부분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두무관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		· 나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		
송수인	<u> </u>	이기호	조상연	이상형		하철승	11/20 박겸수
협 조							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계획



2015.11.19.

강 북 구 (기획예산과)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계획

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「행정절차법」및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정하고 입법예고문에 자치법규안이 게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I 개정이유

- □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
 -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- □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규칙
 - 입법예고문에 자치법규안이 게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하고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.

Ⅱ 주요내용

- □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
 -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방법 중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개정함(안 제3조의2)

 □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-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"경리관"을 "재무관"으로 용어 수정(안 제34조 - 「법제업무 운영 규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 시 명시해야하는 법령안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입법예고문에 추가함(안 별지 제1호서식) -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의 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개정함(안 별지 제3호, 제5호, 제8호서식)
□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□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제23조 □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15조제1항 제3항, 제20조 □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 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12조1항, 제13조제2항, 제16조제3항 □ 「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」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
 Ⅳ 참고사항
□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□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 □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V 추 진 일 정

□ 2015. 12월 중 : 조례규칙심의회 심의

□ 2016. 1월 중 : 의회 안건 상정

- 붙 임: 1.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- 2.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